

업무상재해와 안전

안전나눔

목차

- **업무상 재해의 이해**
- **인정사례로 알아보는 업무상재해와 예방**

안전나눔

업무상 재해의 이해

안전나눔

업무상 재해란

- 업무상 재해의 의의

-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 업무(1994.8.24.재보68607-822)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등

안전나눔

- 업무의 범위에 대한 판례

- 근로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 • 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 재해의 유형

-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 출퇴근 재해

부상
질병
장해
사망

업무상 재해

안전나눔

•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01

재해 유형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02

사업주가
관리

시설물의
하자

03

업무와
재해

상당인과
관계

04

인정 제외

고의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안전나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안전나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안전나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안전나눔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안전나눔

인정사례로 알아보는 업무상재해와 예방

안전나눔

업무상 사고

안전나눔

업무수행 중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안전나눔

사고 사례

제외사항

제외사례

- 작업 중 파이프를 옮기다가 손이 미끄러져 자신의 발에 떨어뜨려 발가락에 골절이 생긴 사고
- 갑자기 쓰러지는 동료를 부축하려다 손목인대가 파열된 사고
- 작업 중 떨어짐 사고로 중상을 입은 사고
- 10분 간의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러 가다가 사업장시설인 제품하차장에서 회사 소속 트럭기사가 운전하는 트럭에 치여 사망한 사고
- 일시적으로 중지된 공사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하여 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몸에 옮겨 붙어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

사고 사례

제외사항

제외사례

- 소속 부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동료직원 부친상에 조의금을 전달하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
- 노무관리를 위임받은 자(관리팀장, 공무과장 등)의 지시에 의하여 약국에 약을 구입하러 가던 중 발생한 사고
- 작업담당 구역으로 가던 중 발생한 사고
- 현장에 작업도구를 차량에 싣고 가던 중 발생한 사고
- 출장 중 과음 후 지정된 숙소에서 자다가 물 마시러 일어나다 벽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정상을 입은 사고
- 출장업무를 마치고 자신의 집에 들러 용무를 본 다음 출장지로 출발하다 발생한 사고

사고 사례

제외사항

제외사례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 근로자의 사적 행위
-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

안전나눔

사고 사례

제외사항

제외사례

- 사업주의 승낙없이 업무 시간 중에 본래의 업무를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휴식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업장 내 2층 다락에 사다리를 제작하다가 떨어진 사고
- 사업장의 음주 금지명령을 위반하고 근무 중 음주한 후 취중에 화장실을 가는 도중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커피를 끓이다가 근로자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는 사고

안전나눔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안전 4능

사고 사례

제외사항

제외사례

- 사업주가 임차하여 사용중인 건물의 창문난간이 낮게 설치되어 있어서 창가의 비품을 집다가 추락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의 전기배선이 낡아 화재로 화상을 입은 사고
- 휴게시간에 화장실에 가려다가 계단에서 미끌어진 사고
- 안전시설이 없는 지하계단을 올라오다가 떨어진 사고
- 근로자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갔다가 떨어져 사망한 사고
- 사업장내 결빙되어 빙판이 된 보도블록에 넘어진 사고
- 사업주가 귀향 편의를 위하여 사업주 소속 차량을 제공한 버스를 타고 귀향도중 발생한 사고

사고 사례

제외사항

제외사례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 또는 이용 중 발생한 사고

안전나눔

사고 사례

제외사항

제외사례

- 근로자가 기숙사에서 커피를 끓이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사고
- 사업장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근로자의 숙소로 이용하게 하고 관리비 등을 부담한 경우라도 동 시설물의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지 않고,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이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경조사에 이용하도록 사업장에서 관광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가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안전나눔

행사 중의 사고

-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안전나눔

사고 사례

제외사항

- 회사 회식장소에서 과음으로 만취한 결과 귀가 도중 넘어져 사망한 사고
- 사업주의 승인을 받고 팀 단위로 실시한 체육대회, 야유회 중 발생한 사고
- 부서주관의 행사의 모임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자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나눔

사고 사례

제외사례

- 사전에 보고된 바 없고, 경비도 각자 부담한 부서단위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
- 사업장이 지원을 받고 있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노동조합 대의원끼리 친선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당한 경우
-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참석자들의 사적이거나 자의적인 유흥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회식에서의 사고
- 관리소장이 주관한 회식에 참석해 2차 회식장소에서 나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사망한 사고

안전뉴스

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
- 천재지변 :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 :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안전나눔

요양 중의 사고

- 대상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
-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거주지 또는 근무지에서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통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안전나눔

사고 사례

- 업무상 부상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생긴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고
-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물리치료를 받던 중 넘어져 발생한 사고
- 산재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침대 중 침대대에서 떨어진 사고
- 산업재해로 무릎을 다쳐 재활치료를 위해 통원하던 중 보행장애로 다리를 접지른 사고
-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영양 중 심신상실로 자살한 사고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사고

-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
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
무라고 인정되는 사고

안전나눔

사고 사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는 사고
- 직원의 사기진작과 친목도모를 위해 사업주가 개최한 야유회 도중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사회생활과 관련된 충고 및 회사운영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듣는 부하직원의 태도가 불손하다고 생각하고 쇠파이프로 때린 사고

안전 4호

업무상 질병

안전나눔

직업성 질병

- 직업성 질병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안전나눔

- **재해성 질병**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안전 4호

업무상 질병 유형

질병 사례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 호흡기계 질병
 - 림프조혈기계 질병
 - 눈 또는 귀 질병
 - 감염성 질병
 -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
 -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
 -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질병 등
- 근골격계 질병
 - 신경정신계 질병
 - 피부 질병
 - 간 질병
 - 직업성 암

- 기존업무와 무관한 배치전환에 의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증 발병
- 피로누적과 벽지에서 자취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급성심근경색증 유발
- 고도 고혈압의 기초질환을 갖은 만 46세여성이 과중한 업무 및 감원에 대한 스트레스로 퇴근길에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통근버스 탑승위해 질주하던 중 급성 심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반복적인 팔레트 운반 작업으로 인해 허리와 어깨 등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 유형

질병 사례

- CAD컴퓨터 작업으로 인해 목과 어깨, 손목에 근막통증후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된 경우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작업

안전나눔

출퇴근 중의 사고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안전나눔

제외 사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사고 사례

- 출퇴근 경로 일탈 중 사고
- 출퇴근 경로 중단 중 사고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 이후 이동 중 사고

❖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 인정

안전나눔

제외 사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사고 사례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 기관에 데려다 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안전나눔

제외 사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사고 사례

-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일탈 또는 중단인 경우라도

그 전 과정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의 재해만 보호

안전 4호

제외 사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사고 사례

-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
- 출 · 퇴근길에 만원 지하철을 타다 승객들에게 밀쳐져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경우
 -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 버스정류장으로 이동 중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부딪혀 이마가 찢어진 경우
 - 퇴근 후 정상적인 경로로 걸어서 집에 가던 중 자전거를 탄 동네 아이와 충돌하여 엉치뼈가 골절 된 경우
 -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

제외 사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사고 사례

- 평소 회사 통근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B씨가 늦잠을 자 부랴부랴 택시를 이용하여 출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A씨가 업무를 종료하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가다, 집 앞 편의점에 들러 생수를 사고 나오던 중 편의점 문에 손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용접기술을 배우기 위해 퇴근길에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당뇨약을 받기 위해 퇴근길에 주치의 병원에 방문하여 약을 처방받고 퇴근하다 발생한 사고

제외 사항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사고 사례

- 출근길에 자녀를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 주고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나눔

**업무상 재해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지만
발생했다면 제대로 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4우